

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3개월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법인·단체명			
	주 소 (전화번호 :)			
지원센터 개요	명 칭			
	주 소 (전화번호 :)			
	지원센터장의 성명		생년월일	
	운영 예정 연월일			
전담인력	가족친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		명	
	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		명	
	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		명	
	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 홍보 담당자		명	

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성평등가족부장관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.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.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주민등록표 등·초본(법인이 아닌 경우)	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면심사 (1차심사)	→	현장심사 (2차심사)	→	종합심사 (3차심사)	→	결 정	→	통 보
신청인		처리기관 : 성평등가족부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										